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(제 회)	

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등 의 성 과 평 가
및 성 과 관 리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최기영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추적평가 시 연구성과의 활용실적이 없거나 미흡한 사업에 대해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·활용하기 위해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673호, 2021. 6. 23. 시행)됨에 따라, 현장방문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현장방문조사)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평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,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

1.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 성과가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
2.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성과 활용·확산이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
3. 그 밖에 자체성과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

③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 신 설 ></u>	제10조의2(현장방문조사) ①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방문조사는 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평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해당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한 기관, 단체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.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 1.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개발사업 성과가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 2.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시 연구성과 활용·확산이 미흡한 원인 및 이에 따른 조치계획 등

현행	개정안
	3. 그 밖에 자체성과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현장방문조사 결과를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체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사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933